

# 고 성 군 세 조 례 증 개 정 조 례 안

(의안번호 제669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2. 21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2. 22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12. 27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조례를 개정하여 군세부과 ·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- 가.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(안 제3조, 제18조, 제41조, 제42조, 제45조, 제46조, 제47조, 제48조, 제49조, 제50조, 제51조)
- 나. 세차 · 현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 상향 조정(안 제37조)
- 다. 담배소비세의 세율 상향조정(안 제55조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세법개정안이 2000년 12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되고, 경상남도 세정 13430-11680(2000. 12. 8)호로 시 · 군세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(2001. 1. 1)에 준하여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고성군세조례 중 관련 조항을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
- 이는 지방세계의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(군세)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그러나, 모든 법률과 법령 등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금까지 개정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부로부터 공포되지 않은 법률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법률에 위배됨으로 금번 제출된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더라도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은 법률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개정하려는 사유는
- 답 : 지난 12월 15일 국회에 통과되어 12월 30일 공포한다는 정부방침이 시달되었으며, 본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개정된 지방세법의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데 법적 하자가 발생하고 세수결함을 가져옴.

## 6. 토 론

- 찬성의견 :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이 통과되었고, 정부에서 12월 30일 공포할 것이라 하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한 후, 개정 지방세법 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본 조례를 공포하는 형식으로 신축성 있게 처리하면 가능함으로 찬성함.
- 반대의견 :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더라도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은 법률사항을 소급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위법함으로 반대함.

## 7. 심사결과

- 2000. 12. 27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